|  |  |  |
| --- | --- | --- |
|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관리방법**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령 제14호《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관리방법》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제67차 부 사무회의에서 심의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부장 尹蔚民2011년 6월 29일**제1장 총 칙****제1조** 보험가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등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이라 함은 서면, 전자데이터 등 캐리어에 기록된, 보험가입자 개인 및 그 소속단위에서 사회보험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보험의 권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여기에는 하기 내용들을 포함한다. (1) 보험가입자 및 그 소속단위의 사회보험 기록정보 (2) 보험가입자 및 그 소속단위의 사회보험료 납부 및 관련수당 취득 정보 (3) 보험가입자가 사회보험 대우자격 및 그 대우를 향유한 정보(4) 보험가입자 보험료 납부연한 및 개인계좌 정보 (5) 사회보험가입자의 개인권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타정보. **제3조** 사회보험기구에서 사회보험 개인권익기록을 관리하고 사회보험가입자의 개인권익기록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 정보화 종합관리기구(이하 정보기구라 함)에서는 사회보험 개인권익기록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 보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에서는 사회보험가입자의 개인권익기록을 감독한다. **제4조** 사회보험가입자의 개인권익기록은 시간성, 완벽성, 정확성, 안전성 및 비밀보장원칙을 준수하고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이를 상업거래나 영리활동에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불범누설해서도 아니 된다. **제2장 수집과 확인****제5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업무활동과 통계, 조사 등 방식을 통하여 보험가입자 개인의 권익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 동시에 사회보험료 징수기구, 공상부서, 민정부서, 공안부서, 기구편제부서 등에서 통보한 상황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보험기구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의료기구, 산재재생기구, 보조기재 장착, 설치기구, 관련금융기구 등(이하 사회보험 서비스기구라 함) 및 보험가입자와 그 소속단위에서는 지체 없이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사회보험기구에서는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제6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업무 원시자료에 의거하여 시의 적절하게 사회보험 개인권익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구가 인터넷을 통하여 사회보험 개인 권익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관련 안전조치도 수집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수속 카운터에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정보의 수집 작업을 완료해야지 백스테이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의 보험료 액수, 대우기준, 개인계정 입금액, 보험료 납부연한 등 대우 지급 계산데이터는 사전에 설정한 업무규칙에 근거하여 사회보험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원시데이터에 근거한 계산 결과여야 한다. **제7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정보 수집에 대한 1차 심사, 확인, 재확인, 심사인가 제도를 수립하고 직무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에 직무권한을 설정해야 한다. **제3장 보관과 유지****제8조** 사회보험기구와 정보기구에서는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보관을 위한 장소와 설비를 마련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 업무 전용인터넷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제9조**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 보관은 하기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완벽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 저장 관리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2)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의 보관, 인출판독, 백업기록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검측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한다. (3)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백업매체는 따로 입력해두어야 한다. (4) 보관 소프트와 하드 환경, 저장캐리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를 이전, 전환하는 동시에 기존 데이터를 보류하여 사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자의 직업유동으로 인해 사회보험관계 이전수속을 하는 경우 새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즉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접수하여 관리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원 보험가입지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전출한 후에도 규정에 따라 원 기록을 보류함으로써 사열에 대비해야 한다. **제11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일상유지, 기록의 완벽성과 합리성 검사를 책임지도록 하는 동시에 규정절차에 따라 수정, 보완하게 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구에서 여타 단위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독자적으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의 유지 작업을 책임지게 해서는 아니 된다. 여타 단위나 개인의 협조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험기구에서 당사자와 비밀유지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12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유지일지를 설정하여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 유지 일시, 내용, 유지원인, 처리방법, 책임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3조**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정보의 수집, 보관, 유지 등 절차 및 서면자료는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4장 조회와 사용****제14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보험가입자 및 그 소속단위에게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조회절차를 사회에 공개하고 조회내용을 확정하며 사회보험기구 웹 사이트, 단말기 또는 전화나 서비스네트워크를 통하여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제15조** 사회보험기구 서비스네트워크에는 전문창구를 설정하여 보험가입자 및 그 소속단위에 무료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가입자가 사회보험기구에 자신의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회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사회보험기구에 자신의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수탁인은 서면 위탁서와 본인의 유효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서면 조회결과를 요구하거나 본인의 보험료, 대우향유 등 서면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서 사회보험기구에서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보험가입자의 소속단위에서는 유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사회보험기구에서 무료로 본 단위의 보험료 납부상황 및 종업원 재직기간의 이 방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관련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자나 그 소속단위에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기구에 서면 확인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보험기구는 그를 재확인하고 확실히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해야 한다. **제17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와 정보기구에서 거시적 관리, 의사결정 및 정보시스템 개발 등 목적을 위하여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험기구에서 업무수요에 의거하여 제공범위를 규정한다. 합법적 업무이행 직책의 수요가 아닌 경우 제공하는 자료내용에 직접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관련 행정부서나 사법기관 등에서 업무직책 이행을 위해 합법적으로 사회보험가입자의 개인권익기록을 조회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법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과 기록종목의 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의 조회를 신청하는 기타 신청자는 사회보험기구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단위의 유효 증명서류, 단위명칭, 연락방법(2) 조회목적과 법적의거 (3) 조회한 내용. **제20조**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신청을 접수한 사회보험기구는 심사확인하고 하기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절차에 따라 제공하고(2) 법적 의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제21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사회보험가입자와 그 소속단위를 제외한 여타 단위의 사외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조회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22조** 사회보험기구에서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교환하거나 조회범위규정을 초월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비밀유지와 안전관리****제23조**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비밀제도를 구축한다.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부서, 사회보험기구, 정보기구, 사회보험 서비스기구, 정보기술 서비스업체 및 그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에서 알게 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에 대한 비밀유지책임을 부담하며 불법으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이 방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조회하는 관련 행정부서와 사법기관은 그가 취득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약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으로 타인에게 누설해서도 아니 된다. **제25조** 정보기구와 사회보험기구는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의 안전시스템과 안전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고 긴급 대처방안 관리와 재해복구훈련을 보강함으로써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26조** 정보기구에서는 사회보험기구의 요구에 따라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시스템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업무고객 및 정보조회 고객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객의 신분확인과 권한통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시스템 관리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고객의 업무수속이나 고객의 정보조회 직무를 겸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법률책임****제27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및 기타 관련 행정부서나 사법기관이 비밀유지의무를 어긴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8조** 사회보험기구, 정보기구 및 그 임직원에게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서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회보험기금, 소속단위나 개인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정보를 제때에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2) 시스템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고객의 업무수속, 고객의 정보조회 직무를 겸임한 경우(3) 악의로 소속단위나 개인과 내통하여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위조, 개찬하였거나 사회보험가입자 개인의 허위 권익정보를 제공한 경우(4)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분실, 훼손하였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인멸한 경우(5)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자의로 제공, 복사, 공포, 매출하였거나 위장 거래한 경우(6) 안전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 가입자 개인 권익데이터를 여타 단위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거나 유지하게 한 경우**제29조** 사회보험 서비스기구, 정보기술 서비스업체 및 이 방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권익기록을 취득한 단위 및 그 임직원이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사회보험기구와 약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였거나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에 따라 그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가타 직접 책임인원 처벌한다. 사회보험기금이나 소속단위와 개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일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제멋대로 제공, 복사, 공포, 매출하였거나 위장 거래하여 불법소득을 얻은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에서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사회보험 서비스기구나 정보기술 서비스업체인 경우 사회보험기구가 그와의 서비스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그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을 처벌하고 사회보험기금이나 소속단위와 개인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일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제31조**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관리와 관련한 회계 등 자료로서 국가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법률, 행정법규에서 관련 업무를 기타 감독관리부서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2조** 이 방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管理办法**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第14号《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管理办法》已经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第67次部务会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7月1日起施行。部 长 尹蔚民二Ｏ一一年六月二十九日**第一章　总　则****第一条**　为了维护参保人员的合法权益，规范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等相关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第二条**　本办法所称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是指以纸质材料和电子数据等载体记录的反映参保人员及其用人单位履行社会保险义务、享受社会保险权益状况的信息，包括下列内容：（一）参保人员及其用人单位社会保险登记信息； （二）参保人员及其用人单位缴纳社会保险费、获得相关补贴的信息；（三）参保人员享受社会保险待遇资格及领取待遇的信息；（四）参保人员缴费年限和个人账户信息；（五）其他反映社会保险个人权益的信息。**第三条**　社会保险经办机构负责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管理，提供与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相关的服务。人力资源社会保障信息化综合管理机构（以下简称信息机构）对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提供技术支持和安全保障服务。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对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管理实施监督。**第四条** 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遵循及时、完整、准确、安全、保密原则，任何单位和个人不得用于商业交易或者营利活动，也不得违法向他人泄露。**第二章　采集和审核****第五条** 社会保险经办机构通过业务经办、统计、调查等方式获取参保人员相关社会保险个人权益信息，同时，应当与社会保险费征收机构、工商、民政、公安、机构编制等部门通报的情况进行核对。与社会保险经办机构签订服务协议的医疗机构、药品经营单位、工伤康复机构、辅助器具安装配置机构、相关金融机构等（以下简称社会保险服务机构）和参保人员及其用人单位应当及时、准确提供社会保险个人权益信息，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按照规定程序进行核查。**第六条**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依据业务经办原始资料及时采集社会保险个人权益信息。通过互联网经办社会保险业务采集社会保险个人权益信息的，应当采取相应的安全措施。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在经办前台完成社会保险个人权益信息采集工作，不得在后台数据库直接录入、修改数据。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中缴费数额、待遇标准、个人账户储存额、缴费年限等待遇计发的数据，应当根据事先设定的业务规则，通过社会保险信息系统对原始采集数据进行计算处理后生成。**第七条**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建立社会保险个人权益信息采集的初审、审核、复核、审批制度，明确岗位职责，并在社会保险信息系统中进行岗位权限设置。**第三章　保管和维护****第八条** 社会保险经办机构和信息机构应当配备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保管的场所和设施设备，建立并完善人力资源社会保障业务专网。**第九条** 社会保险个人权益数据保管应当符合以下要求：（一）建立完善的社会保险个人权益数据存储管理办法；（二）定期对社会保险个人权益数据的保管、可读取、备份记录状况等进行测试，发现问题及时处理；（三）社会保险个人权益数据应当定期备份，备份介质异地存放；（四）保管的软硬件环境、存储载体等发生变化时，应当及时对社会保险个人权益数据进行迁移、转换，并保留原有数据备查。**第十条**　参保人员流动就业办理社会保险关系转移时，新参保地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及时做好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的接收和管理工作；原参保地社会保险经办机构在将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转出后，应当按照规定保留原有记录备查。**第十一条**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安排专门工作人员对社会保险个人权益数据进行管理和日常维护，检查记录的完整性、合规性，并按照规定程序修正和补充。社会保险经办机构不得委托其他单位或者个人单独负责社会保险个人权益数据维护工作。其他单位或者个人协助维护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与其签订保密协议。**第十二条**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建立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维护日志，对社会保险个人权益数据维护的时间、内容、维护原因、处理方法和责任人等进行登记。**第十三条**　社会保险个人权益信息的采集、保管和维护等环节涉及的书面材料应当存档备查。 **第四章 查询和使用****第十四条**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向参保人员及其用人单位开放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查询程序，界定可供查询的内容，通过社会保险经办机构网点、自助终端或者电话、网站等方式提供查询服务。**第十五条** 社会保险经办机构网点应当设立专门窗口向参保人员及其用人单位提供免费查询服务。参保人员向社会保险经办机构查询本人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的，需持本人有效身份证件；参保人员委托他人向社会保险经办机构查询本人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的，被委托人需持书面委托材料和本人有效身份证件。需要书面查询结果或者出具本人参保缴费、待遇享受等书面证明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按照规定提供。参保用人单位凭有效证明文件可以向社会保险经办机构免费查询本单位缴费情况，以及职工在本单位工作期间涉及本办法第二条第一项、第二项相关内容。**第十六条**　参保人员或者用人单位对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存在异议时，可以向社会保险经办机构提出书面核查申请，并提供相关证明材料。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进行复核，确实存在错误的，应当改正。**第十七条**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信息机构基于宏观管理、决策以及信息系统开发等目的，需要使用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依据业务需求规定范围提供。非因依法履行工作职责需要的，所提供的内容不得包含可以直接识别个人身份的信息。**第十八条** 有关行政部门、司法机关等因履行工作职责，依法需要查询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的，社会保险经办机构依法按照规定的查询对象和记录项目提供查询。**第十九条** 其他申请查询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的单位，应当向社会保险经办机构提出书面申请。申请应当包括下列内容：（一）申请单位的有效证明文件、单位名称、联系方式；（二）查询目的和法律依据；（三）查询的内容。**第二十条** 社会保险经办机构收到依前条规定提出的查询申请后，应当进行审核，并按照下列情形分别作出处理：（一）对依法应当予以提供的，按照规定程序提供；（二）对无法律依据的，应当向申请人作出说明。**第二十一条**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对除参保人员本人及其用人单位以外的其他单位查询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的情况进行登记。**第二十二条** 社会保险经办机构不得向任何单位和个人提供数据库全库交换或者提供超出规定查询范围的信息。**第五章　保密和安全管理****第二十三条** 建立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保密制度。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社会保险经办机构、信息机构、社会保险服务机构、信息技术服务商及其工作人员对在工作中获知的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承担保密责任，不得违法向他人泄露。**第二十四条** 依据本办法第十八条规定查询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的有关行政部门和司法机关，不得将获取的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用作约定之外的其他用途，也不得违法向他人泄露。**第二十五条** 信息机构和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建立健全社会保险信息系统安全防护体系和安全管理制度，加强应急预案管理和灾难恢复演练，确保社会保险个人权益数据安全。**第二十六条**　信息机构应当按照社会保险经办机构的要求，建立社会保险个人权益数据库用户管理制度，明确系统管理员、数据库管理员、业务经办用户和信息查询用户的职责，实行用户身份认证和权限控制。系统管理员、数据库管理员不得兼职业务经办用户或者信息查询用户。**第六章 法律责任****第二十七条**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及其他有关行政部门、司法机关违反保密义务的，应当依法承担法律责任。**第二十八条** 社会保险经办机构、信息机构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给社会保险基金、用人单位或者个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一）未及时、完整、准确记载社会保险个人权益信息的；（二）系统管理员、数据库管理员兼职业务经办用户或者信息查询用户的；（三）与用人单位或者个人恶意串通，伪造、篡改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或者提供虚假社会保险个人权益信息的；（四）丢失、破坏、违反规定销毁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的；（五）擅自提供、复制、公布、出售或者变相交易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的；（六）违反安全管理规定，将社会保险个人权益数据委托其他单位或个人单独管理和维护的。**第二十九条**　社会保险服务机构、信息技术服务商以及按照本办法第十九条规定获取个人权益记录的单位及其工作人员，将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用于与社会保险经办机构约定以外用途，或者造成社会保险个人权益信息泄露的，依法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给社会保险基金、用人单位或者个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三十条** 任何组织和个人非法提供、复制、公布、出售或者变相交易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有违法所得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没收违法所得；属于社会保险服务机构、信息技术服务商的，可由社会保险经办机构与其解除服务协议；依法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给社会保险基金、用人单位或者个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七章 附 则****第三十一条** 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管理涉及会计等材料，国家对其有特别规定的，从其规定。法律、行政法规规定有关业务接受其他监管部门监督管理的，依照其规定执行。**第三十二条** 本办法自2011年7月1日起施行。 |